

농식품분야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1.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2.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4.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5.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6.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7.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2018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9월 조기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044-201-1776~9)

- 매년 11월에 지급하던 쌀·밭 고정직불금과 조건불리직불금을 올해는 농업인의 자금수요가 많은 9월에 조기 지급하여 추석 명절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급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이며, 밭·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씩 인상하여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60만원입니다.
- 또한, 조건불리직불금의 마을공동기금 적립·운영 여부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직불금 신청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조기 지급>

- 추진배경 : 직불금 조기 지급을 통한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
- 주요내용
 - ①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
* (쌀고정)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 및 초지
 - ② 지급단가 : 쌀고정 직불금 평균 100만원/ha, 밭직불금 평균 50만원/ha, 조건불리직불금 60만원/ha
 - ③ 지급시기 : '18.9월 중
- 시행일 : 2018년 9월

수입축산물 이력제도,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6)

□ 지난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수입쇠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들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유통번호 이력신청, 포장처리실적, 거래내역신고, 이력번호 표시·게시 등)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8호)

<수입돼지고기 이력제도 전면 실시>

□ 추진배경 : 수입·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 제고

□ 주요내용

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적용

－ 기 시행되고 있는 수입쇠고기 이력제도와 동등한 의무사항 부과

② 의무 적용 대상 영업

－ 수입·유통 :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조리·판매: 영업면적 700㎡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 통신판매업

□ 시행일 : 2018년 12월 28일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044-201-1736)

-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신청서 외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도록 되어 있으나,
-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의 방문신청 외 온라인신청(정부24)도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지법령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자민원 서비스 관련 고시 제정>

- 추진배경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을 규정
- 주요내용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를 제정하여 방문 외에도 정부24(www.gov.kr)를 이용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가능
- 시행일 : 2018년 6월(예정)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44-201-1754)

□ 고령 은퇴농업인도 조합의 명예조합원(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 지원, 사업 이용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제도의 도입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지역농업협동조합정관례 행정예고

<명예조합원(준조합원) 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은퇴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준조합원 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일선조합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조합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명예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선택안 마련

- 자격 : 연령 및 조합가입기간이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조합은 연령기준 70세 이상,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 권리 : 준조합원의 기본 권리 + 교육지원사업, 복지사업 및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 지원

□ 시행일 : 2018년 6월 11일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2)

□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됩니다.**

○ '18년 7월 1일부터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으로 **GPS 장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추가)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

* 기존등록대상: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가축전염병예방법>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및 시행규칙 별표2의2(시설출입차량)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추진배경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주요내용

①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화물차량을 축산차량 등록대상에 추가

□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 044-201-2559)

-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질병 치료 및 예방·예찰 비용을 지원하는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는 가축의 폐사를 보상하는 가축재해보험과 별도로 살아있는 가축의 질병 치료를 보장하는 공적 가축진료체계입니다.
-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16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18~'19년은 소 축종에 한해 우선 적용한 후 점차 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또한 농가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농가에 대한 질병 예찰과 예방 활동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가축질병보험

<가축치료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

- 추진배경 : 축산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가축방역 강화
- 주요내용
 - ① 시범사업 기간 : 2018~2024년(7년간)
 - ② 시행기관 : NH농협손해보험, 농협중앙회
 - ③ 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18년 예산 17억 : 보험료 지원 15억, 효과분석: 2억)
 - ④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축 질병치료보험료 지원 및 정기적인 농가 예방·예찰 활동 지원
- 시행일 : 2018년 8월(예정)

* 시범사업 지역 선정 및 보험요율, 보장범위 등 세부 보장내용 검토 중

농약 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 044-201-1895)

□ 농약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농약 판매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농촌진흥청으로 일원화하여 농업인의 권익확대와 농약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농약의 판매가격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현장에서 농약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 11월 1일 부터는 농약관리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 판매상이 농약의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또한 그동안 농약관리관리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농약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 9월 6일부터는 **농약관리관리인에 대한 안전사용기준과 취급 제한기준에 대한 교육***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 판매관리인은 연1회 이상 교육 이수 의무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농약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농약가격표시제 시행 및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추진배경 : 농업인의 권익 확대를 위해 농약의 실제 가격 표시 실시 및 위탁업무의 부실 수행 등 개선을 위한 직접 수행 제도 대선

□ 주요내용

- ① 농약관리법령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며,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 ②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민간위탁을 농촌진흥청 직접수행(농협 등 농약 관련 4개 단체 → 농촌진흥청)

□ 시행일

- ① 농약가격표시제 : 2018년 11월 1일
- ② 농약관리관리인 교육기관 일원화 : 2018년 9월 6일